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2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권영진 · 김상훈 · 박충권

이만희 · 김도읍 · 조승환

이성권 · 엄태영 · 박덕흠

배준영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위하여 생활물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동별로 생활물류"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중 "단체"를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종사자는 소화물배송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이륜차배달라 이더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육·훈련
- 3. 소화물배송 관련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
-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대상 금융 및 법률지원
- 5. 그 밖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이륜차배달라이 더협회는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이륜자동 차배달라이더협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지방자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 치단체의 장은-----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하여 <u>생활물류</u> 쉼터를 설치·<u>운영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수 있다. 라 읍 • 면 • 동별로 생활물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 <신 설> 물류 쉼터의 설치 ·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단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 체 <u><신</u> 설> 제40조의2(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 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는 소화물배송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 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의 교육·훈련
- 3. 소화물배송 관련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대상 금융 및 법률지원
- 5. 그 밖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이륜 차배달라이더협회의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이 륜차배달라이더협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u>⑥</u>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의 설립 및 설립인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